

의안번호	2203674
의 퇴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4.
추 계 번호	24F356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위기지역 사업전환 기업 및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
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78.6억원, 2027년 93.6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57.7억원(연평균 85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0.006억원(연평균 0.00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166.4억원(연평균 55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91.3억원(연평균 3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(안 제75조의3)		0.002	0.002	0.002	0.006	0.002
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9조제1항·제2항)	취득세	-42.7	-49.6	-57.6	-150.0	-50.0
	재산세	-3.7	-3.7	-3.7	-11.0	-3.7
	등록면허세	-1.8	-1.8	-1.8	-5.4	-1.8
	계	-48.2	-55.1	-63.1	-166.4	-55.5
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0조제1항)	취득세	-22.4	-22.4	-22.4	-67.3	-22.4
	재산세	-8.0	-8.0	-8.0	-24.0	-8.0
	계	-30.4	-30.4	-30.4	-91.3	-30.4
합계		-78.6	-85.5	-93.6	-257.7	-85.9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5조의3 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「중소기업 사업 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79조제1항·제2항 (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)	○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3	안 제80조제1항 (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)	○ 법인이 공장을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5조의3 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79조제1항·제2항 (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80조제1항 (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액 2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이 20만원 수준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의 본점·주사무소 및 공장 등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향후 증가한다고 가정
 -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향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제1항)
 -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본사 등을 이전하는 해에 등기 및 등록면허세 신고·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(안 제75조의3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

- (제도개요 및 감면 실적)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(50%)와 재산세(5년간) 50%를 감면함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액 2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0년 신설된 동 제도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34만원, 2021년 14만원, 2022년 14.7만원으로 연평균 20만원 수준

(3) 추계결과

-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0.002억원, 2027년 0.002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0.006억원(연평균 0.00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(안 제31조제6항)	-0.002	-0.002	-0.002	-0.006	-0.002

나.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(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 제1항)

(1) 감면실적

- (감면실적)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(본사·주사무소 이전) 2022년 기준 취득세 27.3억원, 재산세 4.0억원, 등 록면허세 1.8억원 감면
 - －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본사·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,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.2% 수준
 - －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본사·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3.7억원 수준

- (등록면허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본사·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1.8억원 수준
- (공장 이전) 2022년 기준 취득세 22.4억원, 재산세 8.0억원 감면
 -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취득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22.4억원 수준
 -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재산세 감면액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, 신규 취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연평균감면액(8.0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3]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0~2022년

(단위: 건, 억원, %)

			2020	2021	2022	'20~'22 연평균감면액	'20~'22 연평균증가율
본사· 주사무소 이전	취득세	감면건수	62	82	72	-	-
		감면액	20.2	22.4	27.3	-	16.2
	재산세	감면건수	372	365	433	-	-
		감면액	3.7	3.3	4.0	3.7	-
	등록면허세	감면건수	1,618	1,812	1,683	-	-
		감면액	1.7	1.9	1.8	1.8	-
공장 이전	취득세	감면건수	66	63	44	-	-
		감면액	20.3	25.4	21.6	22.4	-
	재산세	감면건수	716	744	744	-	-
		감면액	8.2	8.1	7.8	8.0	-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개정안에 따른 향후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방법으로 추계

-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2년 감면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증가율(16.2%)을 적용하여 추계
-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(3.7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

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(1.8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(취득세 22.4억원, 재산세 8.0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계: 2025~2027년
(단위: 억원)

	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본사· 주사무소 이전	취득세	27.3	31.7	36.8	42.7	49.6	57.6
	재산세	—	—	—	3.7	3.7	3.7
	등록면허세	—	—	—	1.8	1.8	1.8
공장 이전	취득세	—	—	—	22.4	22.4	22.4
	재산세	—	—	—	8.0	8.0	8.0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78.6억원, 2027년 93.6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57.7억원(연평균 85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166.4억원(연평균 55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91.3억원(연평균 3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9조제1항·제2항)	취득세	-42.7	-49.6	-57.6	-150.0	-50.0
	재산세	-3.7	-3.7	-3.7	-11.0	-3.7
	등록면허세	-1.8	-1.8	-1.8	-5.4	-1.8
	계	-48.2	-55.1	-63.1	-166.4	-55.5
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0조제1항)	취득세	-22.4	-22.4	-22.4	-67.3	-22.4
	재산세	-8.0	-8.0	-8.0	-24.0	-8.0
	계	-30.4	-30.4	-30.4	-91.3	-30.4
합계		-78.6	-85.5	-93.6	-257.7	-85.9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